

이기기저	규정번호	-
윤리규정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1/11

윤리규정 실천지침

No.	제·개정일	작성자	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
0	2024. 7. 24.	경영지원본부 기획팀	제정



윤리규정	규정번호	-
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2/11

목 차

[제 1 장	총칙]4
제1조	적용범위
제2조	목적
제3조	용어의 정의
[제 2 장	책임 및 권한]5
제4조	책임 및 권한
【제 3 장	일반사항]6
제5조	윤리 관련 의문사항의 해결
제6조	위반행위의 보고 및 처리
제7조	윤리경영 접수채널
【제 4 장	윤리상담]7
제8조	상담 접수
제9조	상담
제10조	회신 및 사후관리
【제 5 장	제보처리]8
제11 <i>조</i>	도 제보 접수
제12조	도 사실 확인
제13조	을 결과 조치
제14조	도 보고 및 회신



윤리규정규정번호-분류번호-윤리규정 실천지침제정일자2024. 7. 24.페 이 지3/11

【제 6 장 제보자 보호】	9
제15조 보호 방침	
제16조 제재 및 감면	
【제 7 장 자료 및 보안관리】	10
제17조 자료의 보관, 열람 및 폐기	
제18조 보안관리	
[부칙]	10
[서식]	11
윤리경영 실천 서약서	



이미그저	규정번호	-
윤리규정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4/11

【제1장 총칙】

제1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고객, 협력회사 및 그 임직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된다.

제2조 (목적)

본 규정은 윤리상담과 제보처리에 대한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,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1. 윤리상담

윤리규정과 윤리규정실천지침(이하 '실천지침')을 포함하여, 윤리경영 전반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기준 및 방침에 따른 해석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제보 및 제보자

- 가. 제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규정 또는 실천지침의 위반행위로 생각되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제보자는 임직원 및 고객, 협력회사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.
- 3. 윤리경영 담당자

윤리상담 및 제보처리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의미하며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이다.

4. 리더

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의 장을 말한다.



이미그저	규정번호	-
윤리규정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5/11

【제2장 책임 및 권한】

제4조 (책임 및 권한)

1. 윤리경영 담당자

가. 윤리상담 총괄 : 접수, 상담 및 결과 회신 등

나. 제보처리 총괄 : 접수, 사실확인, 결과 보고 및 회신 등

다. 리더의 협의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

2. 현업부서

사내·외 제보자로부터 접수 받은 사항을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즉시 이관

3. 리더

- 가.소속 임직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
- 나. 소속 임직원의 윤리상담 및 제보에 대한 자문 수행

4. 임직원

- 가. 윤리규정 및 실천지침의 준수
- 나. 윤리경영 관련 의문사항은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윤리상담을 요청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
- 다. 윤리규정과 실천지침의 위반으로 생각되는 사안은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보고 또는 제보
- 라.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



이미그저	규정번호	-
윤리규정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6/11

【제3장 일반사항】

제5조 (윤리 관련 의문사항의 해결)

- 1. 임직원은 윤리규정과 실천지침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윤리상담을 신청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
- 2.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의 윤리상담 신청에 대해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,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윤리경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6조 (위반행위의 보고 및 처리)

- 1. 윤리규정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제보하여야 한다.
- 2.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조직의 리더는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거나 윤리경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 직접 해결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윤리경영 접수채널)

- 1. 윤리경영 담당자는 이해관계자가 윤리상담 및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채널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2. 윤리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.

가. 우편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08, 보령엘엔지터미널 윤리경영 담당자

나. 이메일 : ethics@Ing-tml.com



이기기저	규정번호	-
윤리규정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7/11

【제4장 윤리상담】

제8조 (상담 접수)

- 1. 윤리상담은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한다.
 - 가.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 및 방침
 - 나. 윤리규정과 실천지침의 해석 등
- 2. 윤리경영 담당자는 접수 내용 중 고객불만사항은 사업별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며, 사업별 담당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통보 받는다.

제9조 (상담)

- 1. 윤리경영 담당자는 상담 내용에 대하여 윤리규정 및 실천지침과 회사의 기준 및 방침에 따라 적절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한다.
- 2. 윤리경영 담당자는 관련부서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담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방침을 정립한 후, 이에 따라 상담을 한다.

제10조 (회신 및 사후관리)

- 1. 윤리경영 담당자는 윤리상담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피상담자에게 회신한다.
- 2. 윤리경영 담당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


이미그저	규정번호	-
윤리규정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8/11

【제5장 제보처리】

제11조 (제보 접수)

- 1. 윤리경영 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제보자의 동의 하에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 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.
 - 가. 제보자 인적사항 : 이름, 연락처, 소속 등
 - 나.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
- 2. 제보는 별도 리스트 작성 후 관련 문서와 함께 보관·관리한다.

제12조 (사실 확인)

- 1.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은 실명 제보에 한하여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실제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2. 윤리경영 담당자는 접수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다.

제13조 (결과 조치)

- 1.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이나 협력회사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.
- 2. 비방,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보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.
- 3.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한다.

제14조 (보고 및 회신)

1.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한다.



이미그저	규정번호	-
윤리규정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9/11

2.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보자가 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 요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.

【제6장 제보자 보호】

제15조 (보호 방침)

- 1.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 - 가.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경우, 시정/보호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나.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보자로부터 시정/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,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행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- 2.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.
- 3.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보자 외에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.
- 4. 비방.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 (제재 및 감면)

- 1. 아래 기재된 행위를 하는 등, 제보자 보호방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·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.
 - 가.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
 - 나.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 내용의 누설
 - 다.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등



윤리규정	규정번호	-
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10/11

- 2. 제보자 보호방침에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,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.
- 3. 제보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그 사실을 상담·제보한 경우 회사는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

【제7장 자료 및 보안 관리】

제17조 (자료의 보관, 열람 및 폐기)

- 1. 윤리경영 담당자는 윤리상담·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, 허가된 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. 윤리상담·제보 관련 자료는 목적 달성 이후에는 완전 폐기한다.

제18조 (보안관리)

윤리경영 담당자는 윤리상담 및 제보에 대한 제반 보안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.

【부 칙】

이 실천지침은 2024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

윤리규정	규정번호	-
	분류번호	-
윤리규정 실천지침	제정일자	2024. 7. 24.
	페 이 지	11/11

【서 식】

윤리경영 실천 서약서

본인은 보령LNG터미널(주) 임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회사의 제반 규칙을 지키고 보령 LNG 터미널(주)의 윤리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.
- 2. 본인은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고 어떠한 부정, 비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.
- 3. 본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, 부정·비리 등 비윤리 행위를 제의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겠습니다.
- 4. 본인은 불공정 거래, 부정·비리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한 감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.
- 5.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,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- 6. 본 서약 내용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하며, 이외 사항은 보령 LNG 터미널(주)의 윤리경영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서약자

소 속:

성 명: (서명)

보령LNG터미널(주) 대표이사 귀중